

[장기요양급여(방문요양,방문목욕)이용계약에 관한사항]

* 이용계약의 목적

지역사회의 정신적,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(老人)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.

* 이용대상자

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 자중 가정에서 방문요양, 방문목욕 실시를 희망하는 대상자

* 이용계약 대상자 및 이용기간

- 이용계약 당사자는 등급을 받은 대상자 및 그 보호자가 계약을 할 수 있다.
- 이용기간은 인정서 기일까지 계약하며 대상자, 보호자가 원할 경우,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인정서가 갱신되었을 때는 갱신 시점에 다시 연장계약을 한다.
- 기관과 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.

* 이용계약의 해지

-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.
-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.
-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
-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
- 폭행, 욕설,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
-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
- 기타 계약서 계약해지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

* 계약해지 절차

대상자,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

대상자(보호자)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(계약해지)통보서를 작성하여
통보하고,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.

*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내용

방문요양 서비스-신체활동지원, 인지활동지원, 인지관리지원,정서지원, 일상생활
지원, 개인활동지원 등을 제공한다. 가족이 요양하는 가족요양은 신체활동 지원만
해당된다. 단, 5등급 대상자는 인지활동지원 서비스만 제공함-인지자극활동, 일
상생활 같이하기 등을 제공한다.

방문목욕 서비스-목욕준비, 입욕, 몸씻기, 머리말리기, 옷갈아입히기, 목욕후, 주
변정리는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.

* 서비스 제공 방법

- 방문요양은 사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합의된 대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
계획에 따라 계획된 일정표대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,
인지활동지원, 인지관리지원, 정서지원, 일상생활지원, 개인활동지원서비스를
제공한다.
-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에 있는 욕조 사용 (욕조가
없을 경우는 이동욕조 사용)
- 원칙으로 목욕을 실시하며 신체상 입욕이 안될 때는 목욕의자를 사용실시 할수
있다.

* 서비스 이용료

- 서비스 이용료는 [노인장기요양 보험법] 및 [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
산정방법에 관한 고시]와 그[세부사항]에 따라 산정되고 대상자나 보호자에게
청구한다.
- 이용료(본인부담금)는 기본요금의 일반 15%이고, 감경자의 경우 감경기준에
따라 6%, 9%를 적용하며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한다.
- 이용료는 매월 납부하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, 현금수납할
수 있다.
-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.
-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 발생하는 교통비 등은 대상자 본인이 지불
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